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8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4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9월 6일)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국)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라 국·과단위 기구를 신설·통폐합하고 명칭과 직제순서를 변경하며 기구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 본청 기구 신설·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 변경

- 공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명칭 변경
-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제순서 조정
-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자치행정과를 참여소통과로 명칭 변경

- 행정지원국에 교육청소년과 신설
-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 변경
- 농산지원과를 녹색농정과로 명칭 변경
- 가정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명칭 변경
- 문화산업과를 문화콘텐츠진흥과로 명칭 변경
- 주택과 폐지
- 건설교통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 변경
- 교통관리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 변경
- 교통도로국에 교통시설과 신설
- 도시철도과 폐지
- 도시미관과 폐지

나. 소속기관 기구 신설·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 변경

-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명칭 변경
- 부천시보건소 위생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과로 명칭 변경
- 부천시소사보건소와 부천시오정보건소를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로 명칭 변경
- 뉴타운사업개발단을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명칭 변경
- 도시균형개발과와 공영개발과를 도시재생과와 도시기반시설과로 명칭 변경
-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사업소로 명칭 변경
- 교통정보센터 폐지

다. 구 기구 신설·통폐합 및 명칭·직제순서 변경

- 각 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각 구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
- 3개 구에 도시건축과 신설

라. 행정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사무 조정

- 시민생활 현장방문에 따른 업무 신설(참여소통과)
- 자전거문화 업무 이관(참여소통과 → 도로과)
- 학교지원 및 청소년육성 업무 이관(체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 오정레포츠공원 체육시설운영 업무 신설(체육진흥과)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업무 신설(일자리정책과)
- 평생학습 업무 이관(주민생활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노인복지 업무 이관(가족여성과 → 주민생활지원과)
- 장기요양 업무 신설(주민생활지원과)
- 건축허가 관련 업무 이관(건축과 → 구 도시건축과)
- 부설주차장 관련 업무 이관(건축과 → 구 도시건축과)
- 주택행정 및 공동주택관리 업무 이관(주택과 → 건축과)
- 주차시설 업무 이관(교통관리과 → 교통시설과)
- 철도시설 업무 이관(도시철도과 → 교통시설과)
- 광고물 신고·관리 업무 이관(도시미관과 → 도시디자인과)
- 노점상 관리 업무 이관(도시미관과 → 도로과)
- 교통지도 업무 이관(도시미관과 → 교통정책과)
- 노점상 정비 업무 이관(도시미관과 → 구 건설과)
- 광고물 정비 업무 이관(도시미관과 → 구 도시건축과)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이관(도시미관과 → 구 도시건축과)
- 위생관련 업무 이관(위생과 → 구 환경위생과)
- 하천관리 업무 이관(하수과 → 재난안전관리과)
- 학교도서관·이동도서관·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 운영업무 신

설(시립도서관)

- 도시교통 기획 업무 이관(교통정보센터 → 교통정책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이관(교통정보센터 → 교통시설과)
- CCTV(방범용 제외) 설치 및 운영 업무 이관(교통정보센터 → 교통정책과)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 이관(교통정보센터 → 재난안전관리과)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본청에 도시미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통합한 지가 불과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이유는?</p>	<p>○ 논리적으로 단속업무의 일원화의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모여져 조직개편에 반영한 것임.</p>
<p>○ 부서의 명칭은 그 명칭만 보고도 그 부서에서 무슨일을 하는 지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누차 지적하는 등 여러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p>	<p>○ 일정부분은 반영하였으나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전부는 반영하지 못함.</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식물원이나 영상단지 운영, 시립도서관 등 정책개발 사무가 아닌 일상적인 시설관리 운영 등 단순사무는 아웃소싱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p>	<p>○ 그간의 많은 사무들이 민간위탁되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 효율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오정레포츨센터 등 직영을 통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p>
<p>○ 이번 조직개편이 구청 폐지와 광역동을 신설하겠다는 시장공약사항과 배치되고 실제 구청폐지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p>	<p>○ 구청 폐지문제는 법령개정 등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현 시점에서 당장 구청폐지가 어렵다면 일하는 조직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와 구청의 업무를 적정히 안배하는 차원에서 단속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구청에다가 이관하게 된 것임.</p>
<p>○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있는가?</p>	<p>○ 총액인건비 남는 예산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자 부서별 실태파악 등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p>
<p>○ 교통정보센터가 교통정보나 차량소통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전문가를 영입하였는데 기구를 폐지하면서 종사자들까지 그 직을 없애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p>	<p>○ CCTV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면서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교통영향평가나 교통기획업무를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시에서 해야할 업무임.</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민선5기의 비전달성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인 시정연구단을 신설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와 어떠한 정책을 떠나가실 계획인지?</p> <p>○ 보건소는 조직개편때마다 그 명칭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p> <p>○ 대체적으로 보면 3개팀으로 구성된 과가 상당히 많은 것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 아웃소싱했던 일부 사무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인력활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p>	<p>따라서 교통시설과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교통정보센터를 폐지하게 된 것임. 센터종사자 직은 법령이나 업무여건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를 양해해 주시기 바람.</p> <p>○ 시정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각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임.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정연구단을 운영하는 것임.</p> <p>○ 그간에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된 보건소로 조정하는 사항임.</p> <p>○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완벽한 조직개편이 어렵다하더라도 조직개편후 지역현장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시정연구단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조직내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할 것 인지를 최우선하여 조직진단을 해야 할 것임.</p> <p>○ 뉴타운개발 사업이 가장 큰 현안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창조도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뉴타운 사업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p> <p>○ 시민소통위원회를 옴브즈만이 총괄하는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의 취지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참여소통과의 기능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p> <p>○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직급을 상향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p>	<p>○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p> <p>○ 뉴타운개발 사업이 한시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함. 다만, 현행 규정상 국으로 편제할 수는 없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단이 정식기구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p> <p>○ 참여소통과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소통위원회는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정책현안들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p> <p>○ 행정환경이 바뀌고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이 증가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음.</p>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동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행정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장 복 수직렬을 확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적 극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p> <p>○ 기타 질의답변 : 회의록 참조</p>	<p>○ 동장 복수직렬은 4복수까지 가 능함. 일부 단수직렬도 되어 있는 동장을 복수직렬로 확대하여 인사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 겠음.</p> <p>(이상 총무국장,총무과장)</p>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개편이 아닐 것임.
먼저 정책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
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조직개편이 부수적으로 이루어 져
야 4년간의 시정이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의
미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너무 성급한 과정이라 판단되므로조직
개편안을 보류하고 충분한 시간과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조
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적 관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공
급자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시각에 변함이 없으며, 조직을 개편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되
어 져야 한다고 생각함. 빈번한 조직개편은 행정의 낭비고 시민
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상당
히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나. 찬성토론

-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5기 출범이후 두달여 동안 그 어느때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음. 모든 의견들이 다 받아들여져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 조직개편안을 가결하고 이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2. 사 업 소: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시립도서관, 공원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

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제3조(국장 및 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과·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관·과·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정연구단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기획관, 감사관을 둔다.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녹색농정과를 둔다.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예산의 편성 및 집행·투자심사·심사 분석·성과관리·의회협력·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시세운영·세외수입·수납관리·차량세무 및 체납관리(징수)에 관한 사항
3. 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제·유통·가스·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5. 기업지원·지식산업·산업정책·기술지원·공장설립 및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창출·고용안정·공공근로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7. 농업행정·농식품 유통·축정·자연학습 및 도시원예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복지문화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진흥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사 및 제공·무한돌봄센터 운영·노인복지·장기요양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2. 서민생활보호·보훈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거주외국인 관리·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관광진흥 및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육성·만화산업 및 영상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생정책·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시정비·지구단위·토지정보 및 새주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공용건축물 시설공사·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도시경관·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시범 가로 조성 및 광고물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행정·환경정책·대기관리·수질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녹화·공원조성 및 산림환경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도로국에 두는 과) ① 교통도로국에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도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대중교통·택시화물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주차시설·철도시설 및 지하철 건설에 관한 사항
3. 차량행정·차량등록·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4. 도로행정·도로시설 유지·관리·지하공간개발·자전거문화 확산 및 노점상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민방위·건축물 안전지도·범죄예방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인사·조직관리·후생복지·국제교류·행정서비스
- 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 선거 · 여론관리 · 민간협력 및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3. 정보기획 · 정보운영 · 지역정보 · 통신 및 정보통신기반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 여권 · 생활민원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 친환경무상급식 · 학교지원 · 평생학습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① 각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6조(소장·단장 및 관장) 사업소에 소장·단장 및 관장을 두며, 소장·단장 및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맑은물청소사업소

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나. 수도시설·계량기·급수·탐사·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다. 환경관리·정수·정수시설 운영·시설물 개보수·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라. 하수행정·하수처리장 운영·하수시설 관리·하수관망 정비 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

마. 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쓰레기·대형폐기물·쓰레기매립장·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

2. 창조도시사업단

가. 뉴타운지구 및 신·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다.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체비지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가. 도서의 수서 및 정리

나. 도서의 열람·대출 및 장서관리

다.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라.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마. 학교도서관·이동도서관·작은도서관 및 사립문고 운영

4. 공원사업소

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구청장) 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 한다.

제20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2과(원미구에 한한다), 세무과(소사·오정구에 한한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제2절 동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업무,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적용기한) ① 시 본청 시정연구단의 기구설치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창조도시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⑥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같은 항 제2호 중 “부천시보건소장”을 각각 “원미보건소장”으로 한다.

[별표 1]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부천시청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 녹색농정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 (춘의동 381)
· 차량관리과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동 8)
· 원미보건소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16 (중동 1119)
- 보건관리과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16 (중동 1119)
· 소사보건소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64)
· 오정보건소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129)
· 청소과	부천시 오정구 별말로 122 (대장동 607)
· 시립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6 (원미동 15)
- 심곡분관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24 (심곡본동 562-480)
- 북부분관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301 (도당동 132)
- 꿈빛분관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75번길19 (중동1051-8)
- 책마루분관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121 (중동1192-3)
- 한울빛분관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7 (소사본동 337-1)
- 꿈여울분관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103 (작동 67-1)
· 공원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2 (중동 1177)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27 (원미동 71)
· 심곡1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51번길9 (심곡동 427-6)
· 심곡2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4번길25 (심곡동 135-3)
· 심곡3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352-3)
· 원미1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2번길60 (원미동 99-2)
· 원미2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36번길26 (원미동 126-4)
· 소사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10번길3-9 (소사동 23-1)
· 역곡1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91번길14 (역곡동 225-29)
· 역곡2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99번길35 (역곡동 36-9)
· 춘의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09번길19 (춘의동 171-56)
· 도당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49 (도당동 35-3)

기 관 명	소 재 지
· 약대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44 (약대동 123)
· 중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2 (중동 801)
· 중1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50 (중동 1184)
· 중2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119번길8 (중동 1192-2)
· 중3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13번길39 (중동 1078-4)
· 중4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9번길15 (중동 1032)
· 상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83 (상동 416-2)
· 상1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7 (상동 396-2)
· 상2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95 (상동 557-7)
· 상3동 주민센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48 (상동 528-5)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길 73 (소사본동 64)
· 심곡본1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54 (심곡본동 665-13)
· 심곡본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49번길19 (심곡본동 685-15)
· 소사본1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99 (소사본동 148-30)
· 소사본2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38번길41 (소사본동 133-8)
· 소사본3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68번길56 (소사본동 200-26)
· 범박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29번길1 (범박동 155-4)
· 괴안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0 (괴안동 72)
· 역곡3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8번길53 (괴안동 108-1)
· 송내1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9번길25 (송내동 328-2)
· 송내2동 주민센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22번길101 (송내동 381-8)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129)
· 성곡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25 (여월동 10-36)
· 원종1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51번길43 (원종동 233-3)
· 원종2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29 (오정동 139-7)
· 고강본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79 (고강동 324-4)
· 고강1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72번길8 (고강동 290-2)
· 오정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88 (오정동 114-4)
· 신흥동 주민센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14 (내동 10-2)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명 칭	관할구역	비 고
원미보건소	원미구 일원	
소사보건소	소사구 일원	
오정보건소	오정구 일원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8조제2항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원미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 동, 상1동, 상2동, 상3동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오정구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